

리걸 임팩트 연구

2023 - 03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Handspeak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 정정운(핸드스피크 / 대표)

김효선(법무법인 더함 / 변호사)

연 구 원 : 황수현(법무법인 더함 / 변호사)

박지영(핸드스피크 / 아티스트)

김우경(핸드스피크 / 아티스트)

남진영(핸드스피크 / 한국수어통역사)

백서현(핸드스피크 / 아티스트)

본 연구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리걸임팩트 법제정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 |
|---|----|
| 제1장 서론 | 1 |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 II. 문화 향유권의 개념 | 4 |
| 1. 문화 향유권의 법적 근거 | 4 |
| 2. 본 연구에서 문화 향유권의 개념 | 5 |
|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 6 |
| 1. 연구대상 | 6 |
| 2. 연구방법 | 7 |
| 제2장 장애인의 문화 향유 관련 법제 분석 | 9 |
| I. 관련 법률의 체계 및 내용 | 11 |
| II.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관련 법률 및 판례의 주요 내용 | 12 |
| 1. 장애인복지법 | 12 |
| 2. 한국수화언어법 | 12 |
| 3. 장애예술인지원법 | 13 |
| 4. 장애인차별금지법 | 14 |
| 5.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판례: 영화관 차별구제청구사건 | 24 |
| 6. 시사점 | 28 |
| III. 문화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 29 |
| 1. 문화기본법 | 29 |
|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30 |
| 3. 문화예술진흥법 | 30 |
|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32 |
|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 6. 공연법 | 34 |

| | |
|---|-----------|
| 7. 박물관미술관법 | 34 |
| 8. 시사점 | 36 |
| 제3장 선행연구 및 개정안 분석 | 37 |
| I. 선행연구 | 39 |
| II.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관련 개정안 | 41 |
| 1.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 41 |
| 2. 문화 관련 법률의 개정안 주요 내용 | 50 |
| 3.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 50 |
| 제4장 청각장애인 FGI 및 설문조사 | 53 |
| I. 청각장애인 문화 향유 관련 조사 개요 | 55 |
| II. 설문조사 결과 | 56 |
| 1.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 수요와 접근성 | 56 |
| 2.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접근방법과 문제점 | 57 |
| 3.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해결방법 | 57 |
| 4.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 경험 | 58 |
| III. FGI 조사 결과 | 59 |
| 1. 문화예술시설의 미흡한 편의 제공 | 59 |
| 2. 편의 제공에 관한 정보 파악의 한계 | 59 |
| 3.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의 인식 부족 | 60 |
| 4. 형식적인 편의 제공(한국수어통역/자막)의 문제점 | 61 |
| 제5장 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보를 위한 법령의 개정방향 .. | 63 |
| I.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 개정안 | 65 |
| 1. 법령의 개정방향 | 65 |
| 2.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 66 |
|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 68 |

| | |
|---|-----------|
| 4. 영화비디오물법 개정사항 | 70 |
| 5. 공연법 개정사항 | 72 |
| 6.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사항 | 72 |
| II. 청각 장애인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향 | 74 |
| 1. 문화예술사업자(공연장)의 범위 확대 | 74 |
| 2.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 개별 장애인의 실질적 수요 반영 | 75 |
| 3. 문화예술 분야의 수어통역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 76 |
| 4. 장애인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방침 수립 및 공개 | 77 |
| 제6장 결론 | 79 |
| • 참고문헌 | 83 |

| | |
|--|----|
| 〈표 2-1〉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 13 |
| 〈표 2-2〉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4) | 15 |
| 〈표 2-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 16 |
| 〈표 2-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 | 18 |
| 〈표 2-5〉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적용 대상 | 20 |
| 〈표 2-6〉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2023. 6. 20. 법률 제19480호로 개정된 것) | 31 |
| 〈표 2-7〉 영화비디오물법 제38조 | 32 |
| 〈표 2-8〉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의3 | 35 |
| 〈표 3-1〉 제21대 국회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43 |
| 〈표 3-2〉 제21대 국회 발의된 장애인예술인지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44 |
| 〈표 3-3〉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관련 제21대 국회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내용 | 46 |
| 〈표 3-4〉 장애인 문화 향유권 관련 제20대, 제19대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49 |
| 〈표 4-1〉 FGI 대상자 | 55 |
| 〈표 5-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적용대상인 민간 문화시설 | 74 |

제 1 장 서론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문화 향유권의 개념
-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 즉 문화 향유권은 누구나 차별이나 구분 없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기본적인 인권에 포함된다. 1948년 유엔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문화 향유권이 기본적인 인권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¹⁾. 여기서 보장하는 문화에 대한 권리는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수용하는 자가 이를 자유롭게 향유하는 권리를 포함한다(김세훈, 2005, p.17).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 향유권은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개별법에서 직접 규율한다. 문화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문화 향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 향유권은 장애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향유하는 데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은 비단 문화 향유권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지적되는 경제적 요인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문화 향유 그 자체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영화관이나 공연장 중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좌석이 지정적이 아닌 자유적인 곳을 찾기 어렵고, 그마저도 장애인석이 몇 석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국영화 개봉작 중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삽입이나 수어통역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극이나 다른 공연장에서도 문자, 수어통역 서비스, 화면해설 등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화기본법에서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명시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러한 법률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의 문화 향유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논의 중인 개정의 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문화 향유권 확보 및 개선을 위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문화 향유권의 개념

1. 문화 향유권의 법적 근거

문화기본법 제3조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하면서, ‘문화적 기본권’에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포함하여 규정한다. 그 외에도 문화적 기본권의 내용을 세분화하자면, ①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할 권리, ③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④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황승흠, 2021, p.32).

그 중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 향유권이란 누구든지 문화적 생활을 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란 접근(Access)에서의 차별금지를 포함하여 최대한 동등하게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황승흠, 2021, p.3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 향유권이란 문화의 참여와 기회균등의 보장 및 차별금지로 요약할 수 있다(정광렬, 2017, p.44).

문화 향유권은 단지 문화기본법에 따른 법률상 권리만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에도 속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제10조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전원

재판부).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은 헌법 제10조 외에도, 문화적 차원의 최저 수준 보장을 그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35조의 환경권 등도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문화 향유권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이 종합된 복합적인 헌법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문화기본법에 의한 법률상 권리 침해만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 문화 향유권의 개념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은 ‘문화예술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문화예술 접근성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차원, 즉 ① 물리적 차원, ② 경제적 차원, ③ 콘텐츠 생산 및 수용의 차원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문영민, 김원영, 2015).

① 물리적 차원이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전시기관에 도달하기까지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된 문화예술 접근성의 문제를 의미한다.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문화예술 시설로 이동하는 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② 경제적 차원이란, 소득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문화예술을 향유함에 있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제적 차원 또한 문화예술 접근성에서 주요하게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③ 콘텐츠 생산 및 수용의 차원이란, 문화 향유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단 또는 조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창작자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용자로서 온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특히, 수용자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전시기관 내부에 휠체어용 좌석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는 휠체어 좌석을 구비하였으나 적절한 안내 또는 이용 지원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어통역, 문자제공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위 세 차원의 문화예술 접근성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관련하여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제도화 과정에서 동등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차원은 장애 유형과 관련 없이 문화소외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반면, 물리적 차원과 콘

텐츠 생산 및 수용의 차원은 장애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정도도 다르고, 요구되는 내용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최근까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하여 물리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에 대한 사항이 주로 논의되며 제도화에 반영되었다.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콘텐츠 생산 및 수용의 차원은 광범위하게 논의되지 못하였고, 일부 사항으로 휠체어 좌석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증폭기 설치 등이 제도화되었다고 평가된다(문영민, 김원영, 2015).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문화 향유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특히 콘텐츠 수용의 차원에서 문화예술 접근성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문화 향유권은 앞서 살펴본 광의의 문화 향유권 전체를 지칭한다고 보다는, 콘텐츠 수용자로서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치 내지 수단을 제공받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국내 등록장애인은 265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장애는 지체장애(44.3%)이고, 그 다음이 청각장애(16.0%)이다. 그런데 2020년 한해 동안 새로 등록된 장애인 8만 3000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청각장애(33.7%)였고, 2022년 한해 동안 새로 등록된 장애인 8만 명 중에도 청각장애(3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²⁾.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청각장애가 비교적 빠르고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46개, 뇌병변장애 33개, 시각장애 47개, 지적장애 131개에 대비해 청각장애는 9개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다(조창빈, 김두영, 2020). 급속하게 청각장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청각장애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2) 보건복지부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참조

충분히 지원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각장애는 물리적 이동의 어려움이 아니라 청각을 통한 정보 접근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문화 향유권 중에서도 특히 콘텐츠 수용 차원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장애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장애유형 중 청각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문화 예술의 수용자로서의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

본 연구는 문화 기본권 및 문화 향유권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한 법제 및 법제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의 개정안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관련하여 관련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고자 하였다.

나. 설문조사 및 FGI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진행하여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및 FGI 대상은 청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가 동반된 장애를 포함하였다. 설문조사는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와 관련한 일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하였고, FGI는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 2 장

장애인의 문화 향유 관련 법제 분석

- I. 관련 법률의 체계 및 내용
- II.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관련 법률 및 판례의 주요 내용
- III. 문화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I. 관련 법률의 체계 및 내용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문화 관련 법률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률, 이른바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 또는 차별금지를 규율하는 과정에서 문화 향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 내용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부터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문화예술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까지 다양하다. 개별 법률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 수 있다. 장애인 관련 법률에는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서 한국수화언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한국수화언어법」도 포함된다.

문화 관련 법률은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하고, 법률에 부분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들 수 있다. 문화 관련 법률로는 문화예술 일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률만이 아니라 각 문화 장르에 따라 규율하는 개별법도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하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음악·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는 행위로서의 공연에 관하여는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으로 각 규율한다.

본 장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장애인 관련 법률과 문화 관련 법률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장애인 관련 법률 검토 시 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차별구제청구사건 판결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관련 법률 및 판례의 주요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舊「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에 전면 개정한 법률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동법은 편의시설에 관하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어통역 등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공에 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제23조)한다.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문화 향유권에 관한 사항은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2.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6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라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나아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의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제1항, 제3항). 또한 이 법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시에 기본계획의 수립, 한국수어의 연구, 교육, 정보화,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의 사용이나 통역에 관한 사항은 한국수화언어법 제 16조(수어통역)에서 규정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통역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①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할 것, ② 공공행사, 사법,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의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할 것 등 수어통역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로서 수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문화 향유와 관련하여 수어통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한국수화언어법은 수어통역의 대상이나 방법, 위반시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집행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장애예술인지원법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 그리고 장애인예술인 관련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은 문화 향유권과 관련한 사항을 직접 규정한다. 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 2)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표 2-1〉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이 247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지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및 고용 지원 등의 예산을 합친 규모이므로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크지 않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안정적으로 장애인 예술지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에 장애예술인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다³⁾.

4.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정·시행된 법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및 차별행위의 개념, 차별금지 영역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다.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규정(제24조)과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제20조) 및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제21조)이 이에 속한다.

가.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규정(제24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 규정의 내용은 크게 1)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 2) 차별행위의 내용 및 판단, 3)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사업자는 차별행위 금지 대상자와 정당한 편의제공

3) 조성민,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패키지3법 대표발의”, 더인디고 기사, 2021.8.3.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차별행위 금지 대상자는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1호)로 그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공공과 민간 또는 규모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의 제공과 관련한 모든 자가 차별행위 금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대상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4에서 정한 자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 국·공립 기관이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 공공적 성격의 문화·예술사업자가 이에 속한다⁴⁾. 또한 민간 사업자의 경우, 사립대학의 박물관·미술관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시설은 일정한 규모 이상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연장의 경우 종합공연장 또는 일반공연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영화상영업자의 경우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표 2-2〉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4)

| 구분 | 구체적 범위 |
|---------|--|
| 국공립, 공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5.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 사립대학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

4) 다만, 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과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구분 | 구체적 범위 |
|----|---|
| 민간 | 1.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2.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2) 차별행위의 내용 및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6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별행위를 모두 금지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래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제1호),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제2호),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제3호), 광고에 의한 차별(제4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제5호),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제6호)로 차별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표 2-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인 직접 차별행위, 제2호인 간접 차별행위 및 제4호인 광고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을 직접 차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또한 금지된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에도 불구하고 ①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이거나, ②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⁵⁾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체적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며,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2.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이처럼 “과도한 부담”에서 ‘과도한’이 의미하는 바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비용이 좀더 소요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상당히 높은 정도의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용복 외(2011)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과도한 부담”은 극단적인 부담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부담, 즉 상당히 크거나, 상당히 불합리하거나, 상당히 훼손적인 부담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등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행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별행위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5) 최승철 외(2016)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한다.

(3)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편의의 세부적 내용은 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③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 제공, ④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이다.

〈표 2-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

이러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일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2호에 의하여 배치되는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은 수어통역사, 낭독자 등 전문인력 뿐 아니라 장애인 의사소통을 필담으로 보조하거나 장애인의 시설 내 이동을 보조하는 인력도 포함한다(최승철, 2016). 또한 제3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는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과 같이 의사소통 지원과 관련한 장비 및 기기로 볼 수 있다. 제4호의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정보 제공도 문화예술 활동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에 속한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정당한 편의에는 문화예술 자체에 대한 수어통역, 자막 제공, 화면해설 등과 같이 문화예술사업자가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산·배포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하여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에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상영 시 제공되는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 및 자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편의제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 판결). 문화예술사업자가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산·배포하는 정보의 접근성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24조가 아니라, 아래 살펴볼 바와 같이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한 제21조에서 규율한다.

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과 관련 규정

(1)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제20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⁶⁾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즉, 개인·법인·공공기관이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형식상 장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항은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즉,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지원·보조하는 인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전자정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하고, “비전자정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2) 정보통신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21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접근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 규정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자인 행위자 등을 규정하면서,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행위자 등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문화·예술사업자, 의료인, 의료기관 등과 체육·복지시설·시설물·이동 및 교통수단 등과 관련한 행위자 등을 말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7), 특히 문화 향유권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문화·예술사업자,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문화·예술사업자는 앞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와 동일하다.

〈표 2-5〉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적용 대상

| 적용기관 | 내용 |
|---------|--|
| 1. 공공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2. 교육기관 | <p>① 교육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사립 특수학교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사립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 「평생교육법」 따른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 |

7) 구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적용기관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p>② 교육책임자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p> |
| 3.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생산·배포 법인 |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생산 및 배포하는 자연인 및 법인(공공기관 포함) |
| 4. 문화·예술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 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 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 5. 의료인·의료기관 등 | <p>① 의료인 등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자·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p> <p>② 의료기관 등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p> |
| 6. 체육 관련 행위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 관련 행위자 |

| 적용기관 | 내용 |
|-----------------------|---|
| 7.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
| 8. 시설물 관련 행위자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 관련 행위자 |
| 9.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p>① 교통수단 관련 행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광역철도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p>② 여객시설 관련 행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 광역철도의 역사 <p>③ 도로 관련 행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
| 10. 사용자 및 노동조합 관계자 | <p>① 사용자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p> <p>②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 포함)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관계자</p> |

※ 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에 따름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수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①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②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 테이프, 표준 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라 명시한다.

즉, 문화·예술사업자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생산·배포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해당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출판물·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 접근성 (제21조 제6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6항에 의하면,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와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출판물 또는 영상물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출판물 발행 사업자 및 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자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국립도서관에 한하여만 새로운 도서자료에 대하여 정보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4) 그 밖의 의사소통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공공기관 행사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1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

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같은 공공단체가 포함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4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3조).

②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21조 제4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은,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으로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을 규정한다. 또한 여기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 고시에서 적용범위, 장애인 방송 제공의무의 유형,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판례: 영화관 차별구제청구사건

장애인 문화향유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판례는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구제청구사건⁸⁾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1심과 2심의 판결에 기초하여 현재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과 그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8)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 판결로 당해 사건은 현재 사건번호 2022다203507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가. 차별구제청구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원고들은 시각장애인⁹⁾, 농인, 난청인 청각장애인으로 피고인 멀티플렉스 영화상영업체가 영화 상영 시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피고 회사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였고, 동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①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고, 보청기기가 필요한 원고들에게는 FM 보청기기를 제공하며, ②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및 상영시간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제공하고, 영화상영관에서 접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어 통역 또는 문자로 그 정보를 제공하려고 판결하였다.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또한 원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한 화면해설 및 자막 제공에 대하여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1심 판결과 달리 피고 회사들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 상영관과 제공횟수 등을 제한하여 판단하였다. 즉, (1) 피고 회사들이 운영하는 상영관 중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좌석 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을 대상으로, (2) 스피커에 화면해설이 나오는 방식(개방형 상영) 또는 위 각 상영관 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를 구비하고 화면해설 파일을 이 기기에 전송하는 방식(폐쇄형 상영)으로 화면해설을 제공하고, (3)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는 방식(개방형 상영) 또는 상영관 당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를 구비하고 자막파일을 이 기기에 전송하는 방식(폐쇄형 상영)으로 자막을 제공하며, (4) 위 (2)와 같이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횟수와 위 (3)과 같이 자막을 제공하는 횟수는 피고 회사들의 각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 포함)만큼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2심 법원은 화면해설,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에 관한 정보는 이미 웹사이트 등을

9) 원고인 시각장애인은 전맹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다.

통해 제공하고 있다는 점, 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수신기기, 자막 수신기기 등의 장비를 제공하여 상영하는 영화의 경우 향후 해당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하겠다고 피고 회사들이 주장하고, 그러한 의무 이행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1심에서 인정한 ‘②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나 영화 상영관에서 원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차별구제청구사건의 주요 쟁점

(1) 영화상영업자의 화면해설 및 자막 제공 의무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인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간접차별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영화와 그에 관련된 정보는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¹⁰⁾, 제6항에 의하여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한 피고 회사들이 영화에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영화상영업자가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작할 권한이 없고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로부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편의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차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영화상영업자가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로부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받아 이를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 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영화상영업자의 의무를 판단하였다.

관련하여 2심 법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하여 규율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시설 및 장비(1호), 보조인력(2호), 정비 및 기기(3호),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4호)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뤄진 화면해설 및 자막은 장애인차별법 제24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규정한 편의제공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영화상영업자의 폐쇄형 상영에 필요한 개인용 수신기기 제공 의무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영화의 상영방식을 화면해설 또는 자막이 상영관 내 모든 관객에게 노출되는 개방형 상영방식과 장애인 관객에게 개인용 수신기기를 제공하여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는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들이 폐쇄형 상영방식에 필요한 개인용 수신기기를 장애인 관객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으로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는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을 규정한다. 법원은 폐쇄형 상영에 필요한 개인용 수신기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이에 상응하는 수단” 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장비 및 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영화상영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향유하고 영화 관람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피고 회사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 스크린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와 자막 수신기기를 각각 제공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은 편의 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제공해야 할 장비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특정 편의를 제공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존재할 경우 특정 편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근거로 피고 회사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 개인용 수신기기 제공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은 정당한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기초하여 상영관 중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 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각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정당한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하고, 해당 상영관에서 개방형으로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상영하거나, 폐쇄형으로 화면해설 수신기기 2개, 자막 수신기기 2개를 구비하도록 하였다.

이 판결은 영화상영업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확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에 대한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차별행위 판단의 법적 근거인 장애인차별법 제4조 제3항의 사유(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를 고려하여 피고 회사들의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를 제한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는 상고심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시사점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보접근이나 의사소통, 문화예술활동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방송 이외에 영화, 비디오물, 출판물, 공연에 대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의무화하지 아니하고, 영화와 공연의 경우 일정한 규모 이상

의 사업자에 한하여만 향유권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 대하여 “노력”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모든 문화예술에 대하여 장애인 아닌 자와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도록 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한 영화상영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에 대하여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차별구제청구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들은 영화 상영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부인하였다. 이처럼 이미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법률의 실효성에 관하여는 사회전반의 인식과 교육, 처벌과 제재의 효과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법률 문언의 명확성도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의사소통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매우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고,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다양한 행위주체가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포괄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하나, 각 개별주체별로는 모호한 지점이 있다. 즉, 문화예술사업자인 공연업자, 영화상영업자, 미술관 및 박물관 등에서 자신들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과 각 문화장르 또는 문화시설을 규율하는 문화 관련 법률을 연계하여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Ⅲ. 문화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1. 문화기본법

문화예술 일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문화정책 방향을 규율하는 것은 문화기본법이다. 문화기본법은 2013년 제정되어 문화 표현과 활동에 관한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과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하여서도 제4조의 국민의 권리로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문화기본법 제8조 제3항 6의2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처럼 문화기본법에서도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문화 향유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창작 및 향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학습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제3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할 의무를 부과한다(제5조의2 제3항). 또한 동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관한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

3.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에

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2년에 제정되었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하여 위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2)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며, (3)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5조의2).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과 그 시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였으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 등에 대한 경비 보조는 임의규정으로 두었다.

그런데 2023. 6. 20. 이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의 정기 실시 의무화를 명시하고, 이 규정은 2023. 12. 2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즉,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보장 및 확대하고자 일정 범위의 문화시설¹¹⁾에 대하여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실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표 2-6〉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2023. 6. 20. 법률 제19480호로 개정된 것)

| |
|---|
| <p>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공연·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11) 이 규정의 적용대상인 문화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데, 해당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화산업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제정되었다.

문화산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제3조)하고, 그 외에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문화산업 일반을 규율하는 문화산업법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세부적 규정을 두지 않고, 관련된 내용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대체하면서 그 편의 제공을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물법”)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하여 전용 상영관에 관한 규정과 영화·비디오물의 향유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전용 상영관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 상영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다. 다른 하나는 2021. 12. 28. 신설된 규정으로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업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표 2-7〉 영화비디오물법 제38조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독립영화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화비디오물법 제38조의4과 49조의2는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한국영화 자막 상영 및 화면해설 상영지원사업이 연간 평균 10여편의 영화만을 지원하고 비디오물에 대한 지원은 더욱 열악하다는 배경 하에서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즉,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사업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화 상영 시 폐쇄자막,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영화비디오물법 제38조의4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모순되게 영화상영업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노력할 의무’로 의무의 수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시 폐쇄자막,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영화비디오물법이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법과의 체계성 및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라 할 수 있다.

6. 공연법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공연법은 이러한 공연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공연장 설치·운영,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한다. 공연법은 장애인의 공연 향유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장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규정은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과 피난안내에 관한 규정 뿐이다.

공연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계획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공연법 제3조 제2항 제1호). 아울러 공연법은 피난 안내에 관하여 공연장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즉,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피난안내의 구체적 사항은 공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공연법 제11조의5 제1항, 제3항,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7. 박물관미술관법

박물관미술관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국공립, 사립,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 전체를 규율한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하여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의3은 편의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한다.

〈표 2-8〉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의3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2. 1. 18. 신설되었다. 위 규정의 신설은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정부 시책의 추진기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국공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실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위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를 장애인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일정 범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의3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아니라 “적절한 편의 제공을 노력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위한 편의 제공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노력할 사항인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의3 제1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그 내용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8. 시사점

문화예술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인 문화예술 관련 법률은 문화 향유권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시책,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문화예술 사업자의 의무를 규율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하여 대부분 선언적 내용을 규정할 뿐,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세부적 사항은 규율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2023. 12. 시행 예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제2항은 일부 문화예술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규정은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한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문화예술 장르를 규율하는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박물관미술관법 가운데 장애인의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법률은 영화비디오법과 박물관미술관법이고, 공연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영화비디오법과 박물관미술관법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유사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비디오법과 박물관미술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제 3 장

선행연구 및 개정안 분석

I. 선행연구

II.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관련 개정안

I. 선행연구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선행연구는 장애인 일반의 문화예술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와 그에 대한 입법과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연구와 장애 유형별 특성에 기초하여 문화 향유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있다.

김선희 외(2019) 연구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제약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발현시킬 콘텐츠나 접근 가능한 관람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하여 시각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이용 가능한 매개 시설, 관람 가능한 내부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승미(2015) 연구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문화예술 내용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문화 향유권이 제약된다. 과거에 비해 상영관, 상영작, 상영시간대가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지만 한국영화 상영작의 경우 청인과 비교할 때 청각장애인 및 농인은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만 영화를 볼 수 있으며, 연극의 경우 관람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전국적으로 수어통역을 통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정기적인 서비스 또한 부재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강제성 없는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영희·이재진(2017)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방송사업자’의 의무가 명확하게 명시됨으로써 해당 규정이 ‘방송법’ 개정의 근거가 되었다는 판단을 전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업자’가 포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동 연구는 장애인에게 접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나 방송, 영화, 연극, 극장, 박물관, 영화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매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률 해석의 모호함을 제거할 것을 지적한다.

또한 이영희·이재진(2017)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규정에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활동에 있어 ‘정당한 편의’ 방식이 대부분 장소나 시설 접근에 필요한 설치 및 기기 제공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자체의 향유를 돕는 방식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제4호)”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규정의 의미가 매우 모호해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영민·김원영(2015) 연구 또한 각 장애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지 못했고, 특히 규범과 실천의 측면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문화예술 제공과정에서 장면·대사·소리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음을 문제로 지적하며, 그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제2항 제3호)”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청각장애인들이 공연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규율하지는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서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차별금지률, 제20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률, 제21조는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들은 문화예술 창작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의사소통, 정보접근에서의 일반조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소극장 공연에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게 되면,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조명을 수어통역사에게 비추어야 하는데, 이는 조명밝기와 각도 등을 통해 미적 요소를 구현하고자 하는 연출자에게는 매우 난처한 상황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 연구는 현행 법령이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존재하고, 그 외에는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대한 편의제공을 다루는 일반규범이 있을 뿐이라고 보고, ‘접근성’의 개념을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김정희 외(2018) 연구는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지원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고 실질적인 문화예술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내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아, 각 지역 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II.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관련 개정안

1.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복지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의안번호 2113419,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은 제7절에 “여가 및 문화복지” 부문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 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개인소득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포함하였고, (2)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 및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놀이기구·온라인프로그램·기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4) 이와 같은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여가지도 담당하는 인력을 지정, 배치하는 정책, 장애인 여가교육시설, 여가학습장 운영 정책, 장애인의 이용 접근 가능성을 제고할 개선 의무,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근거 조항 등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선언적 규정들로 구체적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장애인 여가지도 담당 인력 배치 정책, 장애인 여가시설 설치·운영 정책, 시설 개선 의무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직·간접적인 시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 발의된 또 다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의안번호 2113162,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안) 또한 위와 유사한 취지에서 제5절에 여가 및 문화 부문을 신설하였

는데, 문화예술활동 장려 항목에서 일부 차이를 보인다. 해당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기관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및 참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 관련된 정책이 다수 마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또는 재능이 있는 장애인에게 고등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계속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갖추는 경우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영역의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장애인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도 필요한 조치이다. 생산자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수반되어 장애인 생산자의 저변이 확대되면 장애인을 고려한 문화콘텐츠의 총량이 늘어나는 데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므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외 정보 접근 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한국어 더빙을 요청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안이나(김예지 의원, 의안번호 2123905),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제공하게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려는 안(김용민 의원, 의안번호 2117401) 또한 발의되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자조모임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안(조오섭 의원, 2115335)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문화 향유를 위한 활동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직접 실행함으로써 능동적인 주체로서 문화활동을 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 제21대 국회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의안번호 (대표발의의원) | 개정법률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
| 2123905 (김여지의의원) | 장애인복지법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 더빙을 요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 프로그램의 향유가 힘들. 이에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
| 2117401 (김용민의의원) | 장애인복지법 | 현행법은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폐쇄자막이 방송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제공하게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제3항). |
| 2115335 (조오섭의원) | 장애인복지법 |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자조단체의 구성과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청각장애인이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
| 2113419 (최혜영의원) | 장애인복지법 | 현행법은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여가 및 문화복지 규정 등을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제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 2113162 (장혜영의원) | 장애인복지법 | 현행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원칙, 복지 수요자의 권리 및 공급자의 역할과 의무를 모두 고려한 종합 법률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개별법으로 분리 규정하는 것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여가 및 문화 규정 등 장애인이 장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나. 장애예술인지원법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주로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의 개정이 발의되고 있다. 장애인예술인지원법 제14조 제1항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전담기관에 대하여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예술인지원법 전부개정안(의안번호 2115374)은 위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입법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배치에 더하여 자격 및 직무 내용에 대하여 법령에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장애인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030,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장애예술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공연·전시의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 및 지원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583),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안을 장애인예술인지원법에 마련함으로써(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887)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제도 개선안의 발의가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

〈표 3-2〉 제21대 국회 발의된 장애인예술인지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의안번호 (대표발의의원) | 개정법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 2117583 (김예지의원) | 장애예술인지원법 | 장애예술인들의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추진 및 사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

| 의안번호 (대표발의의원) | 개정법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 2115374 (이종성의원) | 장애예술인지원법 |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과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여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 신설 등). |
| 2115030 (이종성의원) | 장애예술인지원법 | 장애예술인 활동기회의 장이 부족하고, 활동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
| 2111887 (김예지의원) | 장애예술인지원법 | 장애예술인은 예술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신설). |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문화향유권과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발의안은 특정한 문화예술 매체 또는 특정한 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안이 발의되고 있다.

21대 국회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송영상 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902). 또한 영상물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노력의무가 부여되는 사업자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723). 이외에도 장애인이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의 이용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안이 발의되었다(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528). 출판물 영역에서는 현행법상 출판물 발행 사업자에게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을 위한 대체 자료의 제작건수가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노력 의무’를 ‘제공 의무’로 의무화하는 안이 별도 발의되었다(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757).

문화 향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최근 장애인의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 개정에 따라 발생하게 된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발의되었다(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632). 또한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안도 발의되었다(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94).

이외에도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일 경우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행사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이 발의되었다(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562).

〈표 3-3〉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관련 제21대 국회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내용

| 의안번호 (대표발의의원) | 개정법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 2123902 (김예지의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외국어에 한국어 더빙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 접근성에 제한이 있음. 이에 한국어 더빙을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
| 2123757 (김예지의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의 제작 건수가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 |

| 의안번호 (대표발의의원) | 개정법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 2120632 (정희용의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2023년 1월 28일 시행)과 관련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개발, 인증 등에 소요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산업계 입장과 단계적 적용을 반대하는 장애인협회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이에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
| 2119694 (박대출의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 최근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
| 2113528 (김여지의의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 제공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
| 2100562 (진선미의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인이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그러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원요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

영화 및 공연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바 있다.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954)의 경우,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고, 이와 동일 선상의 문제의식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019878)은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배급업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장애인에게 영상물 제공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명시하고,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편의 제공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형태로 발의되었다. 신창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011458)의 경우, 한국 영화와 더불어 공연의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소비할 때, 원칙적으로 자막이 제공되는 외국영화에 비해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영화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안 또한 위와 같이 한국영화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향을 띠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 접근권과 관련하여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017596)의 경우, “공공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의 행위 주체에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부문은 해석상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문제로 보았다. 이에 행위주체에 명시적으로 개인·법인을 포함시켜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되, 개인·법인의 단계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각종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등”의 명시적 정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축소해석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바, 이러한 형태의 개정안은 제공 의무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편의제공의무를 강화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대 국회(2012~2016)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 등에서 무리한 부담이 없음에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당한 편의의 제공기준 및 의무대상자의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3년마다 편의제공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4263)이 발의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무리한 부담이 없음에도 사업장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추적 및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4〉 장애인 문화 향유권 관련 제20대, 제19대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의안번호 (대표발의의원) | 개정법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 2019878 (추혜선의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 그동안 영화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되어 왔음에도 현행 법에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규정도 없는 상황임. 이에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
| 2017596 (정진석의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령의 해석에 따라서는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부문은 그 행위의 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개인·법인도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개인·법인의 단계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등). |
| 2011458 (신창현의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 지체장애인의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
| 2005954 (김세연의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영화업자에게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 |
| 1904263 (유기홍의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 공공기관 또는 민간 사업장 등에서 무리한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의 제공기준 및 의무대상자의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3년마다 편의제공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문화 관련 법률의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451,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규정한다. 또한 이 개정안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수행 업무 항목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규정한다.

이 개정안은 장애문화예술인 양상을 위한 실질적 집행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게 보다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84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위와 같은 건축주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 제공은 미술분야에서 장애인의 작품활동 수행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종류 및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827)이 발의되었다.

3.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가. 현행 법령의 실효성 강화

장애인 관련 법률 및 문화 관련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문화 향유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19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문화예술 매체 또는 특정한 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문화 향유권을 보장 및 확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령, 출판물 영역에서는 현행법상 출판물 발행 사업자에게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건수가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노력의무'를 '제공의무'로 의무화하는 안이 발의되었다.

영화 영역의 경우,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와 동일 선상의 문제의식에서 유사한 의무를 영화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다. 원칙적으로 자막이 제공되는 외국영화에 비해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영화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안 또한 위와 같이 한국영화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향을 띠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문화예술 창작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육성정책 강화

문화예술 창작자로서 장애인의 지면이 확대되면 장애인을 고려한 문화콘텐츠의 총량이 늘어나는 데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영역의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장애인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예술인지원법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과 관련된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 및 지원안 등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건축주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 제공은 장애인의 작품활동 수행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종류 및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발의되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경우 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 하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수행 업무 항목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경우, 장애인이 보다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문화향유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문화예술 관련 정보 접근권의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에서 한국수어 통역이나 폐쇄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위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안이 발의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도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일 경우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유사한 취지에서 또 다른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의 행위 주체에 명시적으로 개인·법인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개인·법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되, 개인·법인의 단계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각종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 개정에 따라 발생하게 된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제 4 장 청각장애인 FGI 및 설문조사

- I. 청각장애인 문화 향유 관련 조사 개요
- II. 설문조사 결과
- III. FGI 조사 결과

I. 청각장애인 문화 향유 관련 조사 개요

청각장애는 한국에서 분류하고 있는 장애 유형 중 의사소통 장애에 해당하므로 의사소통 단계에서의 접근성 향상이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있어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청각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하는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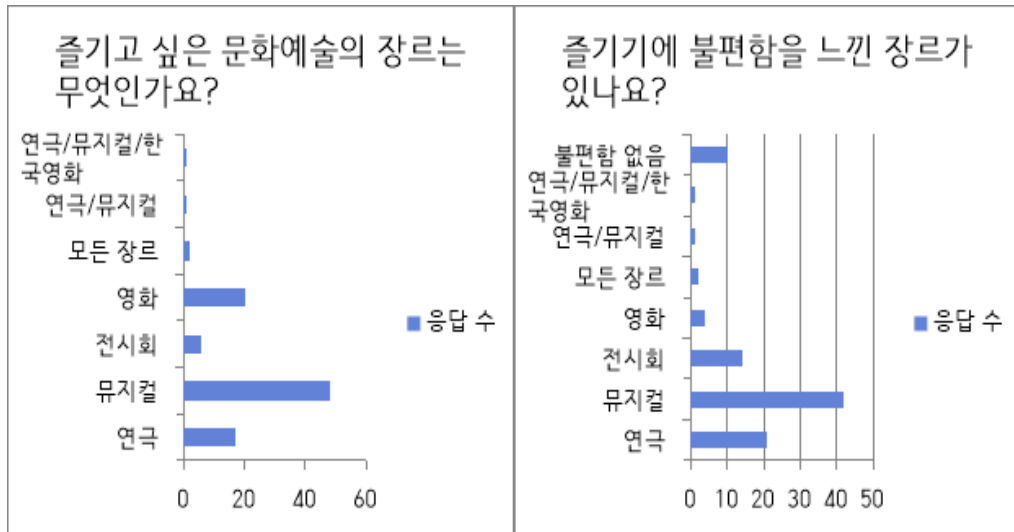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향유 경험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야별(댄스, 연기, 디자인, 공연통역, 장애인접근성매니징 등) 전문가 10명에 대하여 청각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과정에서의 경험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FGI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로부터 문화예술 향유에서의 고민, 문화예술의 향유과정에서의 경험, 앞으로의 과제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선정된 그룹의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표 4-1〉 FGI 대상자

| 연번 | 인터뷰이 표기 | 분야 | 직업 |
|----|---------|--------|---------|
| 1 | A | 연기, 댄스 | 배우, 댄서 |
| 2 | B | 연출, 댄스 | 연출가, 댄서 |
| 3 | C | 디자인 | 디자이너 |
| 4 | D | 연기 | 배우 |
| 5 | E | 공연 | 기획 |
| 6 | F | 영상 | 영화감독 |
| 7 | G | 공연통역 | 한국수어통역사 |
| 8 | H | 공연통역 | 한국수어통역사 |
| 9 | I | 공연 | 접근성매니저 |
| 10 | J | 디자인 | 일러스트레이터 |

II. 설문조사 결과

1.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 수요와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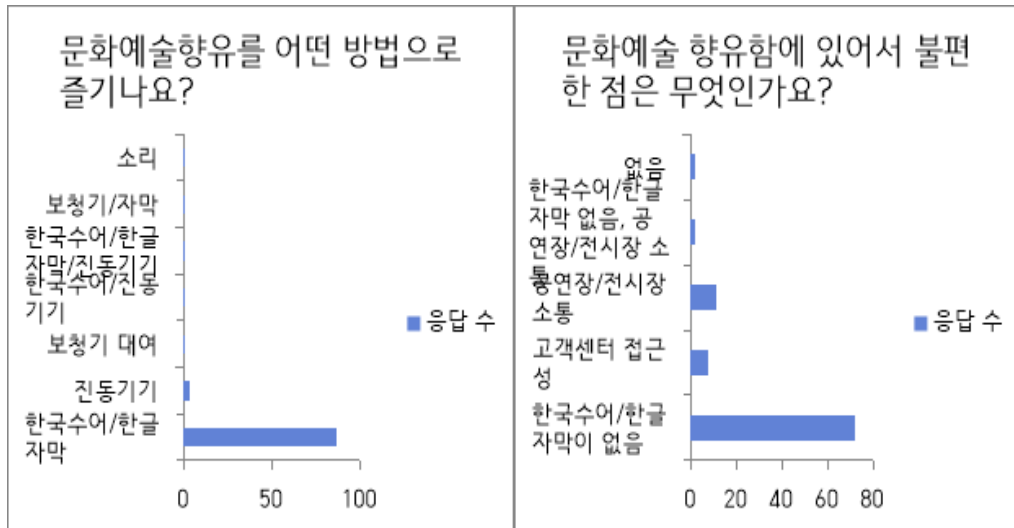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향유하고 싶은 문화예술 장르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뮤지컬이었고, 그 다음으로 영화, 연극이 비슷한 응답수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뮤지컬, 영화, 연극, 전시회 순으로 향유하고 싶은 문화예술 장르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 불편했던 장르에 대한 응답에서도 대다수 응답자가 뮤지컬이 가장 불편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연극, 전시회 순이었다. 반면, 영화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영화를 제외하고 80% 이상의 응답자가 뮤지컬, 연극, 전시회 순으로 문화예술향유의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청각 장애인이 가장 향유하기 싶은 문화예술 장르는 뮤지컬과 연극이었으나, 동시에 이 두 장르는 청각 장애인이 가장 향유하기 어려운 장르로 꼽혔다. 다만 영화의 경우 불편함을 느낀 응답자의 수가 적었는데, 영화 중 외화에는 자막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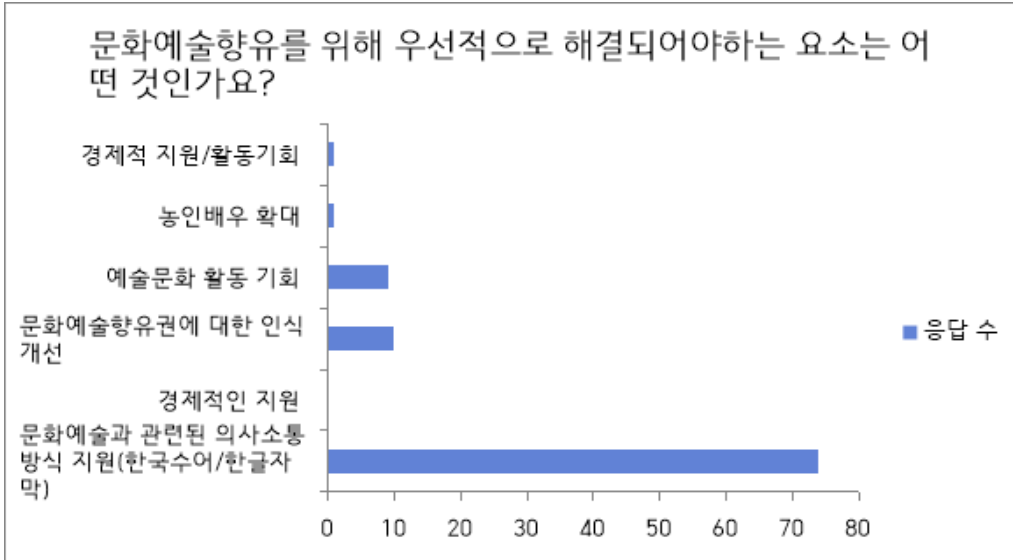
2.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접근방법과 문제점



응답자의 90% 이상이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해 한국수어 및 한글자막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80% 이상의 응답자가 한국수어 및 한글자막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향유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전시장/공연장 소통과 고객센터의 접근성도 각 2순위, 3순위를 차지하였는데, 해당 항목도 의사소통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문화예술향유과정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언어/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해결방법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7.9%가 예술문화와 관련된 의사소통 방식 지원(수어통역/문자통역)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10.5%가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인식개선이 지적되었고, 응답자의 9.5%가 예술문화 활동 기회라고 응답하였다. 즉,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의 제공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화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증대 또한 문화 향유권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개선 과제로 볼 수 있다.



4.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 경험

문화예술 향유 경험에서 불편했던 경험이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예매를 했음에도 입장을 거부당하거나, 혹은 사전에 청각장애인임을 밝혔음에도 현장에서 입장을 거부당하는 등의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즉, 단순히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접근성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응답으로 시각언어인 수어의 특성상 수어로 발화하는 사람이 시야에 확보될 수 있는 자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공연장 규모가 수천 석을 넘어가는 대극장에서는 수어 발화자를 보기 위한 자리를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수어와 동시에 발화자의 표정과 움직임이 주요하게 보아야하므로 대극장 보다는 배우의 움직임과 표정을 잘 볼 수 있는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의 공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공연장 및 소극장은 자금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어통역이나 문자 등 편의 제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수어통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수어통역의 위치를 적합하지 않게 설정하거나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통역의 질이 좋지 않아 공연을 즐기기 어려웠다는 복수 응답이 존재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수어통역을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역 배치의 기준

과 통역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II. FGI 조사 결과

1. 문화예술시설의 미흡한 편의 제공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접근성과 관련한 민원을 제출하고 있어요. 정부기관이나 국립시설에서 하는 문화예술의 경우에도 접근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죠.” (인터뷰이A, 배우)

“과거 영화에 자막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청인은 자막이 있으면 영화관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어요. 모든 과정을 다 요구해야 하니 처음부터 포기하게 되죠.” (인터뷰이E, 공연기획)

청각장애인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사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다. 수어통역이나 문자 등이 준비되지 않은 공연장과 영화관 등에 요청을 넣어도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신문고 등 국가의 힘을 빌리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을 향유하려고 할 때마다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하는 데는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또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과정을 거치더라도 요청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고생스러운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보다는 문화예술 향유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문화예술과의 거리감을 유발한다.

2. 편의 제공에 관한 정보 파악의 한계

“공연이 있다는 것을 거의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혹은 SNS로 알게 되는데 이것도 팔로우 한 정보들만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마저도 자막이나 수어통역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막이나 수어통역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표기하지 않을 때도 있다보니 항상 수어통역이나 자막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모든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이 되다보니 항상 한발 늦어요.” (인터뷰이D, 배우)

“통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혹시 없다면 요청을 해야 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다보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죠. 유명한 공연이라고 해도 흥미가 생기지 않아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인터뷰이E, 공연기획)

청각장애인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 많다. 관람하려는 공연이나 전시에 수어통역이나 자막 등이 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관람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할 때마다 청각장애인도 관람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단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다니면서까지 전문적으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인을 본 적이 없어요. 사회에 나온 이후부터 예술이라는 것을 조금씩 접하지만 복지관 사업 정도였고요. 그 이전에는 농인에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많이 아쉬워요.” (인터뷰이 F, 영화감독)

청각장애인이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은 사회로 나온 이후다. 그 이전인 청소년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수용한 경험이 있어야 창작자로서 성장할 수 있고, 특히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기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너무 늦게 시작되고 그 범위도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이 보장되는 국공립 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청각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창작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다.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접근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의 인식 부족

“접근성을 준비하면서 어려워하는 지점이 예산이에요. 국가나 재단에서 통역 예산을 신청해서 받는 형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동시에 ‘그러면 청인은 어떻게 해?’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접근성의 유무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 고민하자는 것에 역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 환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인터뷰이G, 공연통역)

“한국은 배리어프리 공연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단기간에 급성장한 경향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장애예술 전반의 사고나 인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현장의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팀원이나 스태프가 가진 장애 감수성과 관심의 정도가 다르고 예산이나 셋업, 연습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죠.”(인터뷰이I, 접근성매니저)

국내 공연예술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 또는 장애인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공립 시설의 공연은 일부 장애인 문화 향유권 사업의 일환으로 공연 기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하여 예산을 계획하기도 하나, 민간 공연은 그러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동시에 접근성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이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배리어프리 조치 혹은 수어통역과 한글자막의 필요성을 기획단 내외부의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역차별 논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설득과정에서의 피로도가 높다. 실무관계자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도 중요한 지점이기에,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서는 실무관계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4. 형식적인 편의 제공(한국수어통역/자막)의 문제점

“청인제작자의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어통역이 여의치가 않아요. 매번 다른 수어통역사가 오거나 통역능력이 많이 부족한 통역사가 오면 통역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죠.”(인터뷰이D, 배우)

“농인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농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조명 등 무대 스태프와의 마찰이 생겨요. 동시에 통역을 하지 못할 정도의 통역사가 함께하는 경우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보니 의사소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농인 창작자를 더 무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해요.”(인터뷰이B, 연출)

“통역사가 예술에 대한 전문용어를 모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전문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니 제가 알고있는 개념 중에 통역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치껏 끼워맞춰야 했죠.”(인터뷰이F, 영화감독)

“수어통역이 과하게 무대 밖에 있어 보기가 어렵거나 반대로 수어통역이 과하게 무대로 들어와서 공연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폐쇄형 문자 통역은 기기의 불빛이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몇 개의 한정된 지정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 불편해요. 마

치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휠체어석이 준비되어있는 공연장과 같은 거죠. 수어통역이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인터뷰이C, 공연통역)

청각장애인 제작자와 청인 제작자가 공연을 공동 제작하는 경우 제작의 모든 과정에서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에는 통역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통과정에서 통역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작품 제작 과정에서 현장 파악과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작업자와 청인작업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농인창작자의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창작자에 대한 차별을 생성할 위험이 있다. 이에 더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통역사가 부족하여 통역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통역 오류로 인해 창작자의 전문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중에 한 가지만 고르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외국에서 활동하는 농인 공연기획자를 만났는데 거기는 자막과 수어통역을 함께 제공한다고 해요. 자막이 편해서 자막으로 공연을 보지만, 눈이 피로해지거나 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보면서 환기를 한다고 답변했어요. 문자통역이 있다고 수어통역을 생략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인터뷰이G, 공연통역)

또한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수단과 관련해 수어통역과 한글자막 중 하나를 제공하면 정당한 편의를 모두 제공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는 언어구조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언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과 한글자막 모두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되, 관객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어통역, 한글자막 등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도전적인 시도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법률로 명시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제공되더라도 공연장에서의 통역사 위치선정 문제, 수어통역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시스템 등 문화 향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선과제가 확인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회구성원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법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단순히 수어통역, 한글자막을 배치하는 등 형식적인 수단 제공을 넘어 문화예술영역별로 각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 감수, 검증 과정을 통해 관객 모두의 동등한 문화 향유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제 5 장

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보를 위한 법령의 개정방향

- I.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 개정안
- II. 청각 장애인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향

I.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 개정안

1. 법령의 개정방향

장애인 관련 법률과 문화 관련 법률 모두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화예술 현장에서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방법, 수단 등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는 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차별행위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니, 문화 향유권과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나아가 문화예술사업자가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파악하는 데에도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문화 향유권과 관련한 문화예술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출판업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문화 관련 법률은 문화산업 및 개별 문화 장르를 직접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에 관하여 해당 문화 장르의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인 점은 분명하나,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로 다양한 각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가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별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각 문화 장르를 규율하는 문화 관련 개별법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문화 장르였던 뮤지컬, 연극 등을 규율하는 공연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을 규율하는 영화비디오물법, 박물관 및 미술관을 규율하는 박물관미술관법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연계 및 법체계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함께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로서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규율한 법률이다. 문화 향유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그 제공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영화, 비디오물에 대한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 자막 등 제공 의무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나, 그 외 출판물 또는 영상물에 대하여는 “의무”가 아닌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6항).

즉, 영화, 비디오물, 출판물과 공연 등의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법률상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시청각장애인이 방송 이외의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이영희, 이재진, 2017)라는 평가를 받는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이 모든 문화·예술활동에 장애인 아닌 자와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러한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이영희, 이재진, 201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화, 비디오물에 대하여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노력”이 아닌 “의무”로 변경하고, 모든 영상물에 대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6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출판물의 발행에 관하여도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의 제작건수가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23. 8. 9.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

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해당 내용에 기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6항 개정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나. 개정안

| 장애인차별금지법 | 개정안 |
|---|--|
|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① (생략)</p> <p>②~⑤ (생략)</p> <p>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p> <p><신 설></p> <p><신 설></p> |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⑤ (현행과 같음)</p> <p>⑥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 -----출판물----- ----- ----- ----- ----- ----- -----</p> <p><삭제></p> <p>⑦ 제6항의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⑧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급하는 영상물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

| 장애인차별금지법 | 개정안 |
|---|--|
| <p>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⑨ ----- ----- ----- ----- -----, 제4항·제5항·제7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8항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p> |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 자막 등 제공 의무 명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보 접근·이용가능성 측면에서,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측면에서 위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는 영화 상영 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문화예술을 향유함에 있어 필수적 수단의 지원이 배제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규정에서 직접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하나로 한국수어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공개 의무 부여

FGI 조사 결과, 문화·예술을 향유함에 있어서 사전에 각 문화·예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손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연 홍보물만으로 해당 공연에 한국수어통역이나 자막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려면 공연제작사 등에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으로 문화·예술사업자가 제공하는 편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본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이 영화, 공연 등을 향유함에 있어 손쉽게 제공되는 편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향후 시행규칙, 지침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자막을 포함하여 휠체어 좌석,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표식을 공식화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다. 개정안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 시행령 개정안 |
|---|---|
|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생략) |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
|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1. (현행과 같음) |
|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 2. (현행과 같음) |
|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3. (현행과 같음) |
|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자와 동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제공 |
| <신 설> | 6.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편의에 대한 정보 공개 |

4. 영화비디오물법 개정사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는 영화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화비디오물법 제38조의4는 영화상영업자를 포함한 영화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업자에 대하여 영화 상영 시 한국수어, 문자 등 제공하는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였는데, 영화비디오물법은 이를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두 법률의 내용이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관련하여 영화비디오물법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화비디오물법 제38조의4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영화비디오물법 | 개정안 |
|--|---|
| <p>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p>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①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 <p><신 설></p> | <p>② 영화상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
| <p><신 설></p> | <p>③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
| <p><신 설></p> | <p>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영화상영업자의 범위와 제공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다만, 본 연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제작업자·배급업자에 대하여도 장애인의 영상물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영화비디오물법을 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영화비디오물법 | 개정안 |
|---|--|
| <p>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p>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① ----- ----- ----- ----- ----- 제공하여야 -----.</p> |
| <p>〈신 설〉</p> | <p>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
| <p>〈신 설〉</p> | <p>③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영화업자의 범위와 제공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p>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① 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자----- ----- ----- ----- 제공하여야 -----.</p> |
| <p>〈신 설〉</p> | <p>②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 <p>〈신 설〉</p> | <p>③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
| <p>〈신 설〉</p> | <p>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영상사업자의 범위와 제공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5. 공연법 개정사항

공연법은 문화 향유의 주요한 활동인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공연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문화 향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연법에 장애인의 공연 향유에 관한 권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과 민간 일반공연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는 공연법에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공연에 특화된 정당한 편의의 세부적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공연법 | 개정안 |
|-------|--|
| 〈신 설〉 | 제10조의3(장애인의 공연 향유권) ① 공연장운영자는 장애인의 공연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공연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공연장운영자의 범위와 제공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사항

국공립·대학의 박물관 및 미술관과 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행위자가 생산·배포하는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의3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의무 사항인지, 노력사항인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이미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규정하였음에도 박물관미술관법이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마치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두 개별법이 모순·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에 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박물관미술관법 | 개정안 |
|---|--|
| <p>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p> <p>② (생략)</p> <p>〈신 설〉</p> | <p>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 ----- ----- ----- 제공하여야 한다.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와 제공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II. 청각 장애인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향

1. 문화예술사업자(공연장)의 범위 확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민간 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데, 문화시설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표 5-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적용대상인 민간 문화시설

| 구분 | 해당 시설 |
|------------|--|
| 공연장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민간 일반공연장 |
| 영화상영관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 전시시설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대학박물관, 사립대학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 (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
| 지역문화활동시설 등 | •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문화 보급·전수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특히, 주요한 문화활동인 공연의 경우 민간 일반공연장 이상 규모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인정된다. 종합공연장은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을, 일반공연장은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을 말한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즉, 300석 이상의 규모의 공연장에서 실연되는 예술적 관람물만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정당한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전체 공연장 중 운영주체가 공공인 공연장은 683개로 49.5%이고, 민간이 운영주체인 공연장이 670개로 50.5%를 차지한다. 또한 민간 공연장 중 3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일반 공연장 또는 종합 공연장)은 519개로 전체 공연장의 38.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¹²⁾. 이처럼 3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이 전체 공연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연장 이상의 규모에 한정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은 상대의 말을 그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인 독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의 입술 움직임과 얼굴 표정 확인이 용이한 300석 미만의 소규모 극장 공연을 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행과 같이 300석 미만의 극장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의 공연장 이용현황과 편의 제공의 내용, 공연장의 편의제공 신설에 따른 부담 등을 종합하여 공연장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 개별 장애인의 실질적 수요 반영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 장애인이 된 시기, 교육환경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도 각기 다르다. 즉, 청각장애인 중에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어가 아닌 음성언어, 구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난청인은 잔존청력을 극대화해서 소리를 듣거나 상대방의 입모양을 읽는 구화를 사용하는데, 전체 청각장애인 중에는 수어를 사용하는 비율보다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

또한 청각장애인 중 일부는 한국어 문자를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비장애인과 필담을 하거나 문자통역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청각장애인은 한국어 문자를 읽는다고 하여도 이 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언어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의 청각장애인은 청력과 함께 이해의 문제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단순히 수어, 문자 등 특정한 한 수단에만 국한할 수 없고, 수어통역, 자막, 보청기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

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가 있다. 프랑스의 「문화와 장애 접근성에 대한 실천 가이드」에 의하면, 프랑스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하여 청각장애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의 개입을 통해서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도록 한다¹³⁾.

이처럼 청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수어, 문자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예시한 정당한 편의 중 하나를 정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에게는 문자(자막)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공연, 영화,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의 특성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개별 문화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에서 정당한 편의의 다양한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화관 차별구제소송사건의 경우, 영화상영의 방식을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하고 개방형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편의로 규정하고, 폐쇄형의 경우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이 가능한 기기 제공을 편의로 규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문화 향유권이 실제 문화예술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문화 장르별로 구체적 예시를 다양하게 제안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밀착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예술 분야의 수어통역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한국수화언어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이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국수어능력 검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한국수화언어법 제15조). 그런데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은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학 등의 영역을 대상으로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이나 구어와 수어의 본질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언어가 각 전문영역에 따라 고도화·전문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수어 또한 각 분야별로 심화되고, 또한 문화의 수어통역은 해당 예술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화된 분야라 할 수 있다.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성공적인 실연을 한 것으로 평가된 연극 ‘스카팡’의 경우, 극 중 캐릭터의 전담 수어통역사가 수어 통역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캐릭터와 지팡이를

13) 프랑스 문화부, 문화와 장애 접근성에 대한 실천가이드, 2007.2.,80면.

주고 받으며 마치 그의 조수처럼 연기를 한 바 있다. 수어통역사들이 무대에 자연스럽 게 있게 하기 위한 연출이었고, 이러한 세심한 연출과 원활한 수어통역으로 인하여 베리어프리 연극의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처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법제 보원을 통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의 한 수단으로 수어통역이 더 많이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장르별로 보다 전문화된 수어통역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만이 아니라 수어통역사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수어통역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민간 문화예술사업자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방침 수립 및 공개

청각 장애인을 포함하여 전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개별 문화시설 현장에서 그 특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법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문화예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세부적 사항을 시행령에 예시로 규정한다.

문화는 장르별, 시설별 특성이 각기 상이하므로 문화예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사업자 스스로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점검할 수 있고,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각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편의 수단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사업자가 ① 각 시설별로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② 장애인 문화 향유 또는 접근성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행, ③ 장애인 문화 향유 또는 접근성 관련 고충처리 방법, ④ 장애인 문화 향유 및 접근성 업무의 담당자 성명, 담당부서 명칭과 연락처 등에 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문화예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장애인 인구는 2022년 26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119만 명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청각장애로 41만 명 정도에 이른다. 그 외 발달장애(약 25만명), 시각장애(약 25만명), 뇌병변장애(약 24만명) 순이다. 특히, 2022년 한해 동안 새로 등록된 장애인 8만 명 중에 청각장애가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¹⁴⁾.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청각장애 등이 비교적 빠르고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고, 향후 급속한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장애인구의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관련한 장애인 관련 법률과 문화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행 법률에서 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에 미흡한 사항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조사를 통하여 여전히 청각장애인이 가장 대중적인 문화예술인 뮤지컬이나 연극 등 공연을 관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수어통역이나 자막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직접 요구하더라도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또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부적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문화 현장에서 이 규정들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하여 설문조사와 FGI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대면하는 문화예술시설 담당자 또는 창작자 등의 낮은 장애인 감수성과 인식이 주요한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각 문화예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려면 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하여 문화예술인, 관객 등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개선이 있어야 법률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되고, 개별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인 편의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도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장애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장르 또는 문화시설

14) 보건복지부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참조

별, 장애유형별로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다양하게 축적될 필요가 있다. 경험적으로 편의 제공의 다양한 예시들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와 연계하여 문화 관련 법률 중 영화비디오물법, 공연법,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각 개별 장르 특성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법률이 상호연계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장애 유형과 문화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의 내용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법령 개정안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편의의 내용은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를 시행규칙 또는 고시, 지침 등의 형태로 제안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선희, 엄명용, 조준동(2019).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전시예술품 감상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재활복지, 23(1), 105-139. <http://dx.doi.org/10.16884/JRR.2019.23.1.105>
- 김세훈(2005).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서울: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정희, 김용현, 송기호, 유경민(2018).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 제안. 장애인복지연구, 9(1), 1-24. <http://dx.doi.org/10.36064/koddi.2018.9.1.001>
- 문영민, 김원영(2015).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연구: 공연예술 접근성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9(2), 99-128. <http://dx.doi.org/10.16884/JRR.2015.19.2.99>
- 이영희, 이재진(2017). 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연구 : 영화 접근권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6(4), 255-285.
- 이용복, 김인순, 최승철(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정광렬(2017). 문화국가를 위한 헌법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창빈, 김두영(2020). 전국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운영내용 분석. 예술교육연구, 18(4), 1-16.
- 최승철(2016). 문화·예술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한국장애인개발원.
- 하승미(2015).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관한 소고. 인권이론과 실천, (17), 110-123.
- 황승흡(2021). 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문화분야 법제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MINISTÈRE DE LA CULTURE(프랑스 문화부). (2007). *Culture et handicap. Guide pratique de l'accessibilité(문화와 장애 접근성에 대한 실천가이드)*.
- 보건복지부(2023. 4. 19.).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
- KTL 공연장안전지원센터(n.d.).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소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https://kosis.or.kr/web/sub/contents/10100.do>
- 조성민. (2021. 8. 3.).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패키지3법 대표발의.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22890>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처 핸드스피크
전 화 010-2550-4865
인 쇄 업 체 한학문화
(02) 313-7593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